

시즈오카현

# 암 종합상담 Q&A 모음 1

의료비편

경제 · 근로편



시즈오카현 건강복지부

시즈오카 현립 시즈오카 암센터

2007 년 3 월

## 머리말

「암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암이란 진단을 받아 치료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치료의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치료비가 비싸서 걱정입니다.» 등 암에 걸린 본인이나 가족들은 여러 가지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본 「암 종합상담 Q&A 모음」은 이러한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번 책자에는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문제나 「경제적 측면과 근로」 문제에 관하여 몇 가지를 Q&A 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향후 치료나 부작용, 후유증, 의료진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선정하여 작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료비 문제 등으로 곤란할 경우에 참조하여 주십시오.

2007년 3월

시즈오카 현립 시즈오카 암센터  
질병관리센터  
종합상담

## 목차의 사용방법

암 종합상담 Q&A 모음은 알아보고 싶은 내용을 곧바로 찾을 수 있도록,  
내용별로 대항목·중항목·소항목에서 찾을 수 있는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예

저는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고액의 입원비용을 의료기관에 납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상담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 우선 대항목을 봅니다.

대항목 B 에 【의료비가 고액인 경우에 사용 가능한 제도(고액요양비)】 가 있습니다.

다음에 중항목을 봅니다.

중항목 B-2 에 【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항목을 봅니다.

소항목 B-2-2 에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가 있으므로,  
16 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이렇게 하여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 곳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 목차

## A. 의료비 마련으로 고민하고 있는 경우

A-1 P.2  
암에 걸리면 어떠한  
비용이 드나요?

A-2 P.3  
의료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2-1 P.3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은 경우

A-2-2 P.6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를 받은 경우

A-3 P.7  
의료비는 언제  
납부하나요?

A-3-1 P.7  
외래 통원의 경우

A-3-2 P.7  
입원의 경우

A-4 P.8  
의료비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

A-4-1 P.8  
병원내의 상담창구

A-4-2 P.8  
그 밖에 상담이 가능한 곳은?

A-5 P.9  
납부한 의료비가  
고액일 경우, 일부는  
환불된다고

A-6 P.10  
의료비가 고액인 경우,  
대출 등의 제도는  
없나요?

P.13  
고액요양비 항 참조

A-7 P.11  
그 밖의 비용에 대해서

A-7-1 P.11  
인공항문·인공방광 등의 보장구 구입에  
비용이 드는 경우

A-7-2 P.12  
기저귀의 구입비용이 늘어만 갑니다

**B. 의료비가 고액인 경우에 사용 가능한 제도(고액요양비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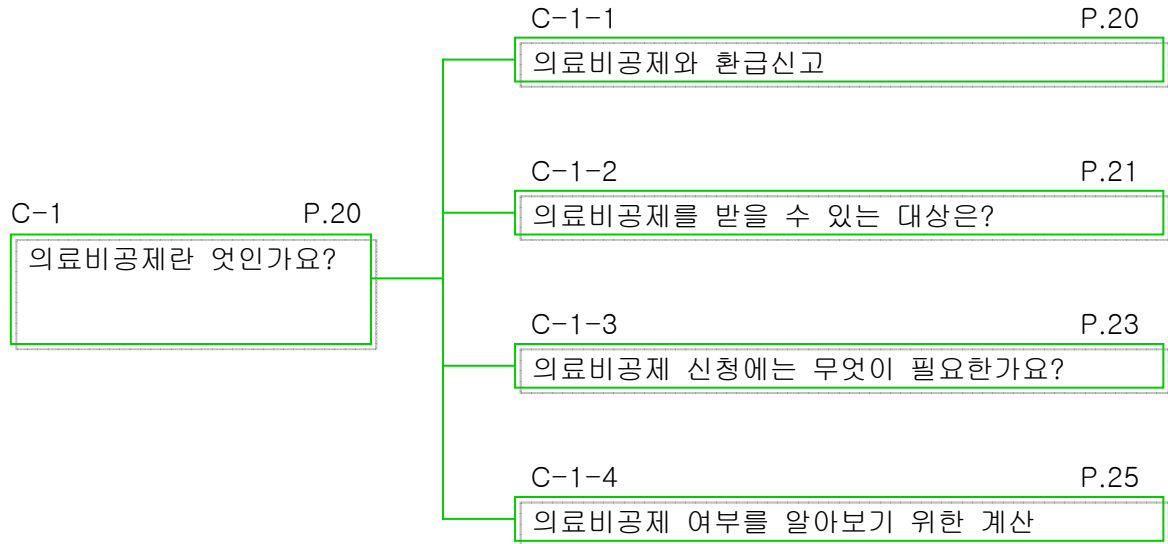
<p>B-1 P.14</p> <p>어느 정도의 금액일 경우에 이용할 수 있나요?</p>	<p>B-1-1 P.14</p> <p>소득별 계산식</p> <p>B-1-2 P.15</p> <p>고액요양비의 산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떤 비용인가요?</p>
--	---

<p>B-2 P.16</p> <p>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p>	<p>B-2-1 P.16</p> <p>신청은 누가하죠?</p> <p>B-2-2 P.16</p> <p>어디에서 신청하나요?</p> <p>B-2-3 P.16</p> <p>신청에 필요한 서류는?</p> <p>B-2-4 P.16</p> <p>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p> <p>B-2-5 P.16</p> <p>언제쯤 환급금을 받게 되나요?</p> <p>B-2-6 P.16</p> <p>신청하는 것을 잊었을 경우</p>
--	--

<p>B-3 P.17</p> <p>동거가족이 병원에 납부한 금액의 합계가 상당한 금액이 될 경우</p>	<p>B-3-1 P.17</p> <p>세대합산이란 무엇인가요?</p>
---	--

<p>B-4 P.18</p> <p>고액이라 일시불이 어려울 경우...</p>	<p>B-4-1 P.18</p> <p>고액요양비의 대출에 대해서</p> <p>B-4-2 P.18</p> <p>수령위임납부에 대해서</p>
--	--

## C. 소득세의 의료비공제 신고방법



D. 휴직이나 퇴직으로 수입이 감소하거나 없어졌을 때

<p>D-1 P.27</p> <p>상병수당금에 대하여</p>	<p>D-1-1 P.27</p> <p>수속은 어떻게 하나요?</p> <p>D-1-2 P.27</p> <p>얼마나 지급되나요?</p> <p>D-1-3 P.28</p> <p>언제까지 지급되나요?</p> <p>D-1-4 P.28</p> <p>기타</p>
<p>D-2 P.29</p> <p>실직한 경우(실업수당)</p>	<p>D-2-1 P.29</p> <p>어떤 제도인가요?</p> <p>D-2-2 P.29</p> <p>언제 급부를 받을 수 있나요?</p> <p>D-2-3 P.30</p> <p>얼마나 지급되나요?</p> <p>D-2-4 P.30</p> <p>그 외의 급부는 어떤 것이 있나요?</p> <p>D-2-5 P.30</p> <p>수속은 어떻게 하나요?</p>
<p>D-3 P.31</p> <p>건강보험의 임의계속이란?</p>	<p>D-3-1 P.31</p> <p>어떤 제도인가요?</p> <p>D-3-2 P.31</p> <p>임의계속 피보험자가 되려면?</p> <p>D-3-3 P.31</p> <p>임의계속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기간은?</p>
<p>D-4 P.32</p> <p>피보험자에서 피부양자가 될 경우의 수속</p>	<p>D-4-1 P.32</p> <p>피부양자란?</p> <p>D-4-2 P.32</p> <p>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려면?</p>
<p>D-5 P.33</p> <p>연금을 빨리 받을 수 없나요?</p>	<p>D-5-1 P.33</p> <p>연금의 조기지급</p>
<p>D-6 P.34</p> <p>생활보호를 받으려면?</p>	

## E.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걱정될 때

E-1 갑자기 수입이 없어진 경우... P.36	E-1-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P.36
	E-1-2 채불임금이 있는 경우 P.37
	E-1-3 실직한 경우 P.38
E-2 주택용자의 변제가 곤란한 경우... P.39	E-2-1 주택용자 계약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P.39
	E-2-2 주택금융공고의 특례 P.40
E-3 자녀의 학비가 걱정될 경우... P.41	E-3-1 학자보험(어린이 보험) P.41
	E-3-2 장학금제도 P.42
	E-3-3 교육용자 P.45
	E-3-4 각종 공적제도 P.47
E-4 장사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변제가 곤란한 경우... P.50	E-4-1 국민생활금융공고의 용자 P.50
	E-4-2 각종 용자제도 P.52



## F. 그 밖에 이용 가능한 제도

<p>F-1                      P.55</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소아 만성특정질환                  치료연구사업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div>	<p>F-1-1                      P.55</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해당하는 질환은?             </div> <p>F-1-2                      P.56</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필요한 서류는?             </div> <p>F-1-3                      P.56</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어디에 신청하나요?             </div> <p>F-1-4                      P.56</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기타             </div>
<p>F-2                      P.57</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특정질환 치료연구사업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div>	<p>F-2-1                      P.57</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해당하는 질환은?             </div> <p>F-2-2                      P.57</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필요한 서류는?             </div> <p>F-2-3                      P.57</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어디에 신청하나요?             </div> <p>F-2-4                      P.58</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기타             </div>
<p>F-3                      P.59</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신체장애자 수첩에                  대해서             </div>	<p>F-3-1                      P.59</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div> <p>F-3-2                      P.59</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필요한 서류는?             </div> <p>F-3-3                      P.60</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div> <p>F-3-4                      P.60</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수첩을 교부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div>

## 자료편

자료 1 P.62

사회보험사무소 일람(시즈오카현)

자료 2 P.63

노동기준감독서 일람(고용보험)

자료 3 P.64

기본수당의 급부일수(고용보험)

자료 4 P.65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 일람(시즈오카현)

자료 5 P.67

건강복지센터 일람(시즈오카현)

자료 6 P.69

특정질환 치료연구사업대상 질환일람

자료 7 P.70

특정질환환자 일부부담액

## A. 의료비 마련으로 고민하고 있는 경우

암 치료를 받을 경우

실제로 어떤 비용이 들까요?

암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병실료 차액,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란?

의료비가 비싸서 어떻게

마련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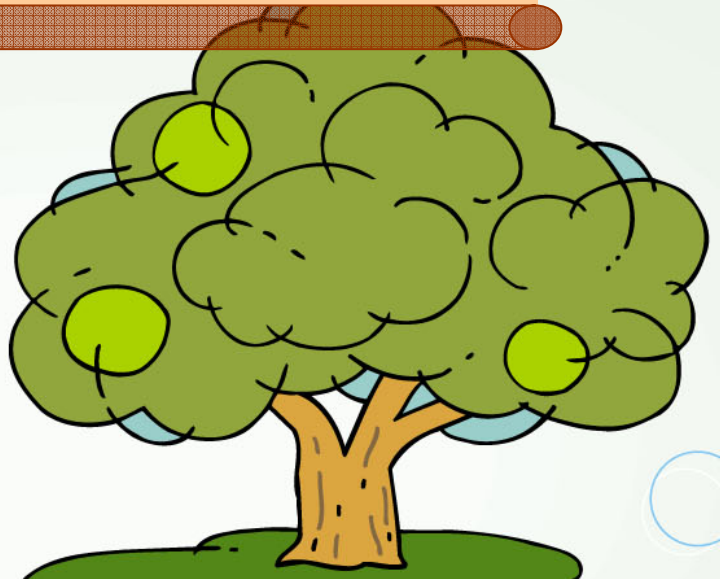
어디에 가면 상담할 수 있을까요?

일시불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자기부담을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나요?

대출해 주는 제도는 없나요?

등과 같은 고민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드립니다.



Q

A-1 암에 걸리면 어떠한 비용이 드나요?

치료나 검사 등 질병과 직접 관련된 비용

혈액검사, CT, X-레이, 에코 등의 검사 및 조직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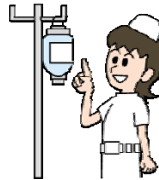
수술 등 치료비



약값



항암제 치료 등에 필요한 링겔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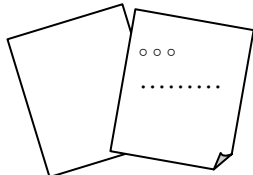
입원중의 식비

그 외에 필요한 비용

보험회사의 진단서 및 증명서 서류 구비 비용



통원을 위한 교통비와 자동차 연료비



가족 면회시의 병문안 용품비와 교통비



입원시의 일용품 및 침구 관련 비용



개인실 등의 병실료 차액



Q

## A-2 의료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암 치료비는 예상외로 많이 들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단과 치료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검사, 수술, 항암제 등 비교적 단가가 고액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주로 병원에 납부해야 할 의료비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은 경우

A-2-1

암 치료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치료의 경우에는 거의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진료입니다.

보험진료의 경우, 치료비는 미리 정해져 있는 「진료보수 점수」라는 것에 따라 계산되므로, 기본적으로 어느 곳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금액은 동일합니다.



#### 입원 기본료의 진료보수 점수

의료기관의 규모, 인원 구성, 설치된 기계기구, 병실의 크기 등에 따라 입원 기본료의 진료보수 점수가 다릅니다.

#### 【실제 납부금액】

실제로 병원 창구에 납부할 금액은 진료보수 점수 1 점당 10 엔으로 계산된 진료보수에 자기부담 비율(현재, 노인보험 대상자, 고령 수급증 대상자 이외에는 30%)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 【2 종류의 진료보수 점수】

### ① 검사나 치료, 약 등의 종류별로 점수가 정해져 있는 것

검사나 치료 등의 종류별로 점수가 정해져 있어서, 횟수에 따라 치료비가 계산됩니다. 일반치료의 경우, 이 방법으로 치료비를 계산합니다.

### ② 1일 단위로 점수가 정해져 있는 것(정액제의 진료보수)

호스피스 병동, 노인보건시설 등의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치료비가 계산됩니다. 이 경우, 검사 등을 몇 번을 받더라도 치료비는 일정합니다.



### 「포괄지불제」에 대해서

의료비의 포괄지불제가 2002 년도의 진료보수 개정부터 대학부속병원 등 특정 기능병원 82 개 의료기관의 입원치료에 도입되었습니다.(앞으로 의료기관의 수는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것은 각각의 질병(진단)과 그 치료별로 1 일분의 입원비를 정해 놓은 것으로, 1,860 개로 분류된 정액요금에 입원 일수를 곱한 의료비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비(수술비 등)는 현재와 같은 개수제 지급의 방식으로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병실료 차액과 식비】**

입원의 경우, 개인실이나 2인실 이상의 병실에서 병실료 차액이 별도로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입원중의 식비는 보험과 상관없이 한 끼 260엔(단, 소득에 따라 감액될 경우가 있습니다.)이 환자의 자기부담액입니다.(환자 자신의 희망에 따른 특별메뉴의 경우, 조금 더 비용이 들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에 필요한 식사의 부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입원했을 때의 식사대 부담은 식사 횟수에 관계없이 하루 단위로 계산되고 있었지만,

2006년 4월 1일부터 식사대의 부담이 한 끼 단위로 계산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 끼당 부담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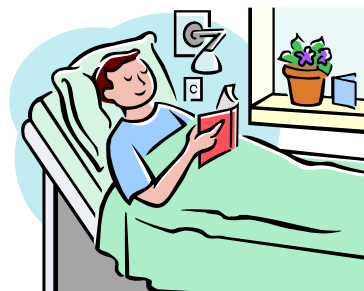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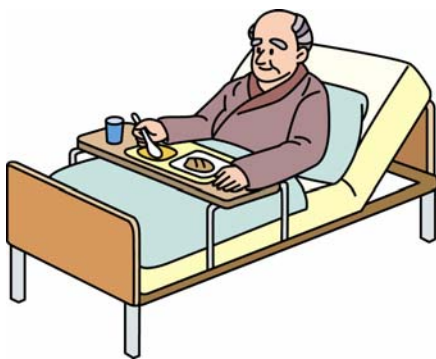


**입원시 식사의 자기부담액**

일반인	한 끼 260 엔
주민세 비과세 세대 해당자(90일까지)	한 끼 210 엔
주민세 비과세 세대 해당자(91일부터)	한 끼 160 엔
복지연금 수급자	한 끼 100 엔

※)주민세 비과세 세대 해당자는 해당관청에 신청하면 감액됩니다.


(보험증과 인감도장 지참)



예를 들어, 일본에서 아직 승인되지 않은 신약을 사용할 경우 등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마다 치료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치료를 받기 전에 비용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최신 암 치료법인 양자선 치료도 현재까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치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자유진료)입니다.**

- 유방암으로 광범위 유방적출 후, 인공유방을 사용한 유방 재건
- 수술로 인한 안면의 변화(안구적출 등)에 대한 보장구치료  
(형성)



**고도 선진의료(후생노동성의 승인을 받은 기관)**

(고도 선진의료란 새로운 의료기술의 출현이나 의료 수요의 다양화에 발 맞추어 선진 의료기술과 일반 보험진료와의 조정을 꾀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보험진료를 기본으로, 별도의 특별요금을 부담함으로써 첨단진료를 받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도 선진의료의 비용**

고도 선진의료에 드는 비용(특수한 검사나 치료 등의 특별요금)은 환자가 「자비」로 부담합니다. 본 요금은 의료의 종류나 병원에 따라 다릅니다.

본 특별요금 이외의 일반치료와 공통되는 부분(진찰이나 검사, 입원료 등)의 비용은 건강보험의 일반 보험진료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특수검사나 치료비용(특별요금)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예) 고행 종양의 DNA 진단 : 국립 암센터 중앙병원, 하마마츠 의과대학 등  
 활성화 자기임파구 이입요법 : 히로시마 대학병원, 도교조시(동경여자)의과대학병원 등  
 고행암에 대한 중입자선치료 : 방사선의학 종합연구소  
 직선가속기에 의한 체간부 병소의 정위 방사선치료 : 홋카이도 대학병원 등

(2004년 1월 현재)



**Q****A-3** 의료비는 언제 납부하나요?

## 외래 통원의 경우

**A-3-1**

대개 진료를 받은 날, 당일 분의 치료비를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입원의 경우 A-3-2

**A-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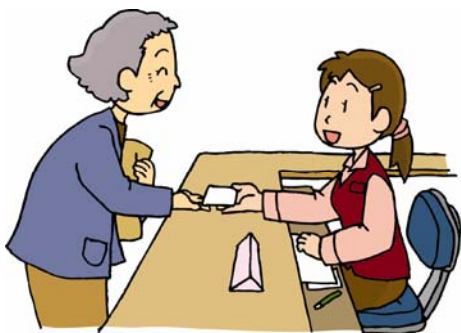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1 개월 단위로 청구서가 발행됩니다. 납부기한까지 비용을 준비하여 회계창구에서 납부합니다.

「입원 안내」 등의 소책자에 청구서는 언제 발행되는지,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원일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퇴원하기 몇 일전에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여 비용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방법은 현금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있으므로, 병원의 회계창구 등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의 회계창구**



Q

## A-4 의료비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

### 병원내의 상담창구

A-4-1

규모가 큰 병원에는 「의료상담실」 등 상담전용 창구를 설치하여, 의료복지사(의료소셜워커)라고 불리는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는 곳이 있으므로, 이곳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병원에 따라서 의료복지사는 의사와 등의 사무부문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복지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담당자에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의료상담실

#### 의료복지사

- ★ 의료비의 납부
- ★ 개호보험에 관한 사항
- ★ 장애인 수첩과 복지제도
- ★ 요양중·퇴원후의 생활  
등에

관하여 상담해드립니다.



### 그 밖에 상담이 가능한 곳은?

A-4-2

사회복지협의회에도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복지활동 전문가에 의한 상담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국민건강보험 담당과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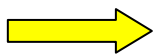
Q

**A-5** 부한 의료비가 고액일 경우, 일부는 환불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장기간에 걸친 암 치료는 생각보다 치료비가 비싸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에서는 의료비 자기부담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어, 이 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의 차액은 신청하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고액요양비 제도)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나 병실료 차액, 입원중의 식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 의료비가 고액인 경우에 사용 가능한 제도」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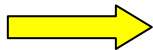
Q

**A-B** 의료비가 고액인 경우, 대출 등의 제도는 없나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고액 의료의 경우, 대출이나 위임 납부 등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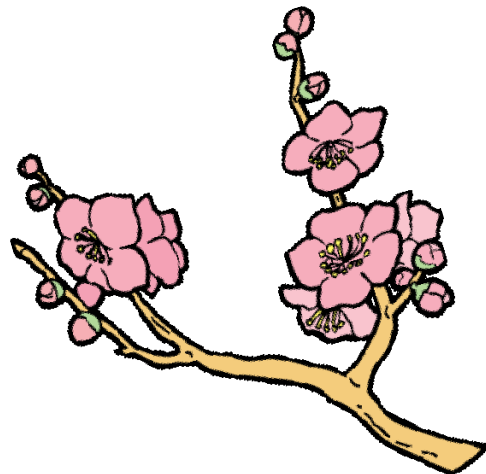
의료비가 너무 고액이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고액요양비로써 지급될 예정금액의 80~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자(사회보험사무소, 해당지역의 국민건강보험 담당과 등)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B. 의료비가 고액인 경우에 사용 가능한 제도」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Q

A-7 그 밖의 비용에 대해서

인공항문·인공방광 등의 보장구 구입에 비용이 든다.

A-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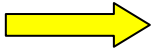
인공항문·인공방광(스토머)을 장착하신 분이 이용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스토머 보장구의 의료비공제】

과세 세대 해당자는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의 「의료비」 의 자기부담액이 10 만엔을 초과한 경우,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의료비」 안에 「스토머 보장구」에 관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스토머 보장구의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담당 의사의 기재가 필요한 「스토머 보장구 사용증명서」(해당관청의 복지담당과에 있습니다.)와 「스토머 보장구 대금 영수증」을 신고할 때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 소득세의 의료비공제 신고방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신체 장애인 수첩의 신청】

영구적인 스토머를 장착하신 분은

장착 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관청의 복지담당과에서

수첩 교부신청서와 진단서 서류를 받으십시오.

수첩을 받으면

① 스토머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04년 3월 현재)

소화기계 스토머 : 월 8,600 엔분의 현물 지급

비뇨기계 스토머 : 월 11,300 엔분의 현물 지급

※) 단, 소득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차감됩니다.

② 그 외에도 수당지급·소득세 공제·보통 자동차 취득세 감면·각종 교통요금 할인 등이 있습니다. 해당관청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하여 주십시오.



신체 장애인 수첩의 신청

해당관청의 복지담당과  
수첩 교부신청서  
진단서 서류를 받는다.

★신청서→본인이 작성

★진단서→현 지정 의사 기재

성인용 기저귀의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입니다.

**인정조건**

치료를 계속적으로 담당하는 의사가 그 치료상 기저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저귀의 구입비는 의료비공제 대상이 됩니다.

- 1)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 대략 6 개월 이상에 걸쳐 거동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의사의 치료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고, 기저귀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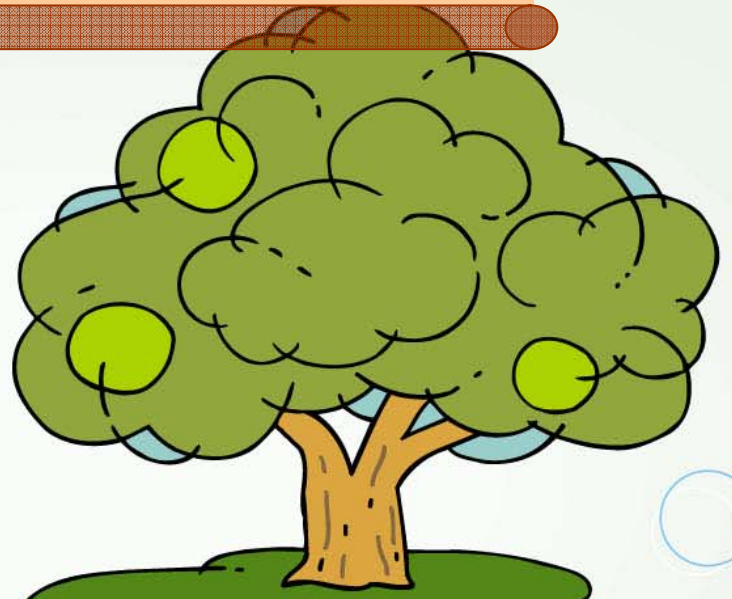
**「기저귀 사용증명서」**

의료비공제의 대상인 경우, 상기 조건을 충족시키며 치료를 하고 있는 의사가 기재한 「기저귀 사용증명서」와 기저귀 대금 영수증(환자의 이름 및 성인용 기저귀 대금라는 것이 증명된 것)을 확정 신고서에 첨부하거나 확정 신고시에 제시합니다.



## B. 의료비가 고액인 경우에 사용 가능한 제도 (고액요양비 제도)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기간 입원한 경우 등에는 의료비의 자기부담액이 고액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경우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한 고액요양비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 고액요양비 제도에 대해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기간 입원한 경우 등에는 의료비의 자기부담액이 고액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매월 일정한 금액(자기부담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 환급되는 **고액요양비 제도**가 있습니다. 동일한 달에 동일한 의료기관에 납부한 의료비가 대상입니다. 외래, 입원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Q**

**B-1** 어느 정도의 금액일 경우에 이용할 수 있나요?

소득별 계산식

**B-1-1**

피보험자(건강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는 자), 피부양자(주로 피보험자의 수입에 의해 생활하고 있으며, 피부양자로서 인정 받은 자) 모두 자기부담 한도액은 소득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산출됩니다. 또한, 최근 1년간 4회 이상이 고액요양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회째부터 자기부담 한도액은 【 】 안의 금액이 됩니다.

70살 미만인 자

(2006년 10월 현재)

구분	자기부담 한도액
생활보호 수급자나 해당지역 주민세 비과세 세대등의 해당자	35,400 엔 <b>【24,600 엔】</b>
월 수입이 53만엔 이상인 자, 그 피부양자	150,000 엔 + (의료비-500,000 엔)×1% <b>【83,400 엔】</b>
상기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80,100 엔 + (의료비-267,000 엔)×1% <b>【44,400 엔】</b>

<계산예>

저는 질병으로 입원하여 1개월에 치료비의 30%로 30만엔을 납부하였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부담액이 30만엔(총 의료비 100만엔)이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되는 금액은

**일반인**

$$300,000 \text{ 엔} - [80,100 \text{ 엔} + (1,000,000 \text{ 엔} - 267,000 \text{ 엔}) \times 1\%] = 212,570 \text{ 엔}$$

**고액소득자**

$$300,000 \text{ 엔} - [150,000 \text{ 엔} + (1,000,000 \text{ 엔} - 500,000 \text{ 엔}) \times 1\%] = 145,000 \text{ 엔}$$

이 됩니다.

※1 2006년 10월부터 부부 합계 월수입이 53만엔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6년 9월까지의 부부 합계 월수입 56만엔 이상)

※2 전체 의료비에서, 정액분을 자기부담 비율(70세 미만인 경우로 30% = 0.3)로 나눈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70 세 이상인 자

(2006 년 10 월 현재)

구분	자기부담 한도액
생활보호 수급자나 해당지역 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의 해당자 (년 수입 267 만엔 이하)	24,600 엔
생활보호 수급자나 해당지역 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의 해당자로 소득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 (1인 가족(독거)으로 연수입 약 65만엔 이하, 부부 2인 가족으로 연수입 약 130만엔 이하)	15,000 엔
일정이상 소득자(1인 가족으로 연수입 약 380만엔 이상, 부부 2인 가족으로 연수입 약 630만엔 이상)	80,100 엔 + (의료비-267,000 엔)×1% 【44,400 엔】
상기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44,400 엔

단, 일정이상 소득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연간 수입액이 「기준이 되는 수입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건강보험 고령수급기준수입액 적용신청」에 의해 10% 부담으로 됩니다.

<계산예>

저는 70세의 고액소득자입니다. 질병 때문에 통원치료를 받았고, 1개월에 치료비의 20%로 20만엔을 납부하였습니다. 환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입원일 경우 환부수속이 필요없지만, 통원치료일 경우에는 수속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부담이 20만엔(총 의료비 100만엔)이므로, 수속을 함으로써 환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부되는 금액은

$$200,000 \text{ 엔} - [80,100 \text{ 엔} + (1,000,000 \text{ 엔} - 267,000 \text{ 엔}) \times 1\%] = 112,570 \text{ 엔}$$

입니다.

※1 2006년 8월부터 부부 합계 연수입이 520만엔 이상 · 단신으로 연수입이 383만엔 이상인 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6년 7월까지의 부부 합계 연수입이 621만엔 이상 · 단신으로 484만엔 이상인 분)

※2 전체 의료비에서, 정액분을 자기부담 비율(30% = 0.3)로 나눈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3 외래분은 환부 수속이 필요합니다. 입원인 경우는 수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액요양비의 산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떤 비용인가요?

**B-1-2**

입원시의 식비나 병실료 차액, 진단서 등의 서류 작성비 등은 고액요양비의 산정대상이 아닙니다.



Q

## B-2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청은 누가하죠?

B-2-1

고액요양비의 환급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어디서 신청하나요?

B-2-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환불대상일 경우에는 해당지역 관청에서 통지가 우송됩니다 (일부지역 제외). 통지 이외에 보험증·인감·병원에서 납부한 영수증·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해당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과 담당창구에서 수속을 해주십시오.

건강보험(정부관장 등) 가입자는 특별한 통지가 없으므로, 사회보험사무소 등에서 신청수속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증에 기재된 각 보험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B-2-3

보험증·인감·병원에서 납부한 영수증·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창구로 가지고 오십시오. 신청서는 각 보험자의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B-2-4

의료기관을 이용한 다음달 이후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 언제쯤 환급금을 받게 되나요?

B-2-5

환급결정은 병원 등으로부터 받은 진료보수명세서(청구 명세서)의 심사를 거쳐서 이루어지므로,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 신청하는 것을 잊었을 경우

B-2-6

보험자에 따라 다르지만, 2년 정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Q****B-3****동거가족이 병원에 납부한 금액의 합계가  
상당한 금액이 될 경우...**

세대합산이란 무엇인가요?

**B-3-1**

동일 세대 내에서 동일 월의 자기부담액이 21,000 엔 이상의 납부가 2 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B-1 의 계산식에 넣었을 때, 자기부담 한도액을 초과한 분이 고액요양비로써 환급되는 것입니다.



Q

## B-4 고액이라 일시불이 어려울 경우...

### 고액요양비의 대출에 대해서

B-4-1

정부가 권장하는 건강보험·선원보험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고액요양비 대출제도」가 있습니다.

고액요양비가 환불되기까지 의료비의 납부 등 당좌의 자금으로써 「고액요양비」 지급 예상액의 80% 상당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속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사회보험사무소(→자료 1 참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는 해당지역에 따라 실시형태(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등) 및 창구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역의 국민건강보험 담당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수령위임납부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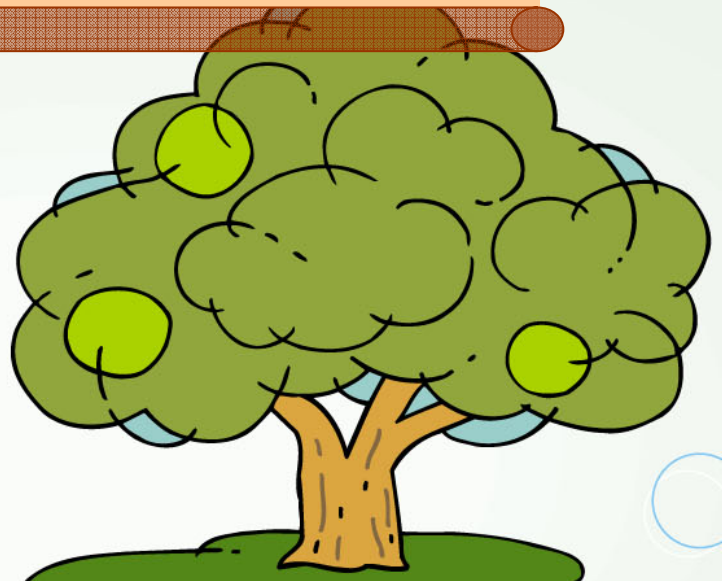
B-4-2

고액요양비 대출제도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고액요양비의 수령위임납부(자기부담분을 의료기관의 창구에 납부하고, 고액요양비분을 보험자가 의료기관에 납부하는 방법)을 취급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시의 유무, 실시형태, 수속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증에 기재된 각 보험자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C. 소득세의의료비공제 신고방법

고액의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의료비공제』라는  
세금면에서의 지원도 있습니다.  
1년간 실제로 납부한 의료비가  
일정액 이상일 경우,  
신고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C-1** 의료비공제란 무엇인가요?

## 의료비공제와 환급신고

**C-1-1**

의료비공제란 1년간(1월 1일 ~ 12월 31일)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그 해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세법에서는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라고 합니다.)이 그 해에 납부한 의료비가 10 만엔을 초과한 경우, 10 만엔 초과 분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며, 신고하면 그 공제액에 대응하는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 의료비공제입니다.

## 의료비공제



소득세의 확정신고기간은 매년 2월 16일부터 3월 15일(토,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다음 월요일)까지 1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세금을 돌려 받는 신고-「환급신고」-에 대해서는 해가 바뀌면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로 세금을 별도로 내고 있어도, 의료비공제는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공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①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 의한 진료 또는 치료비
- ② 안마·마사지·침구사 등에 의한 시술비
- ③ 치료 또는 요양에 필요한 의약품의 구입비
- ④ 재택요양 비용
- ⑤ 입원과 관련된 비용
- ⑥ 의료용 기구의 구입비 등
- ⑦ 진료를 받기 위한 통원비
- ⑧ 의수·의족·목발·의치의 구입비 등



**【통원비를 의료비공제 대상으로 적용할 경우의 주의점】**

원칙적으로 택시비는 의료비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 질병의 상태가 긴급을 요하는 심각한 경우(긴급하게 병원에서 처치를 받아야 할 경우와 걸을 수 없는 경우)나 전철이나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없어서 택시를 이용한 경우에는 택시비도 의료비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통원을 위해 자가용차를 이용하는 것은 진찰을 받기 위해 통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동차 연료비나 주차요금 등 자가용차에 관한 경비는 의료비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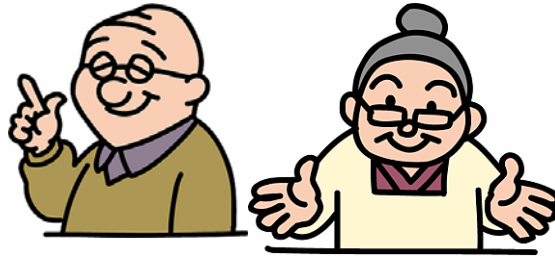
통원비를 의료비공제 대상으로 적용할 경우, 진찰권이나 가계부 또는 의료비의 영수증 등으로 통원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십시오.

**【치료로 인한 탈모로 가발을 구입한 경우】**

가발은 의사의 진료를 받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의료비공제를 받을 경우의 유의점



**【의료비공제 신청시 필요한 서류】**

**봉급생활자인 경우**

- 1) 원천징수표
- 2) 납부한 의료비를 증명하는 영수증
- 3) 영수증이 없는 의료비(통원 교통비 등)의 납부명세(메모): 본인이 작성

**봉급생활자 이외의 경우**

- 1) 납부한 의료비를 증명하는 영수증
- 2) 영수증이 없는 의료비(통원 교통비 등)의 납부명세(메모): 본인이 작성

### 【의료비 명세서】

영수증이 없는 의료비의 납부명세(메모)는 자신이 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하여도 상관없지만,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의료비 명세서」**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의료비 명세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nta.go.jp/>

### 【영수증의 재발행】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소중히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영수증의 재발행을 의뢰하는** 편이 간단합니다. 재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세무서 창구에서 상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영수증이 없는 경우】

기타 의료비로서,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납부내용을 표시하여, 세무서 창구에서 상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통원비에 대해서】

통원을 위해 이용하는 전철이나 버스요금은 보통 진찰을 받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의료비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통원을 위한 전철이나 버스요금은 영수증이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은 사람·납부일·납부내용을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의료비내역」에 기재하게 됩니다.**

의료비공제는 환급신고 중에서도 가장 신고건수가 많은 항목입니다. 따라서, 세무서도 고액의 환급신고를 하는 의료비공제에 대해서는 내용을 신중히 검토합니다. 확정신고서의 기입항목이나 계산에 착오가 없는 한, 세무서는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그 후에 세무서 내에서 내용을 검사하고, 의심이 가는 건에 대해서는 후일 조회 또는 면담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 해에 납부한 의료비에서 「보험금 등으로 보전되는 금액」을 뺍니다.  
여기서 다시 10 만원을 뺀 금액이 의료비공제 금액입니다.

단, 소득금액이 200 만원 미만인 자는 10 만원이 아닌 소득금액의 5%를 뺍니다.

또한, 의료비공제에는 최고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200 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상의 산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begin{array}{r}
 \boxed{\begin{array}{c} \text{그 해에 납부한} \\ \text{의료비} \end{array}} - \boxed{\begin{array}{c} \text{보험금 등으로} \\ \text{보전되는 금액} \end{array}} = \boxed{(A)} \\
 \\
 \boxed{(A)} - \boxed{\begin{array}{c} \text{10 만원 또는 소득금액의 5\%} \\ \text{중 적은 금액} \end{array}} = \boxed{\begin{array}{c} \text{의료비공제액} \\ \text{(최고 200 만원)} \end{array}}
 \end{array}$$



**「보험금 등으로 보전되는 금액」에 해당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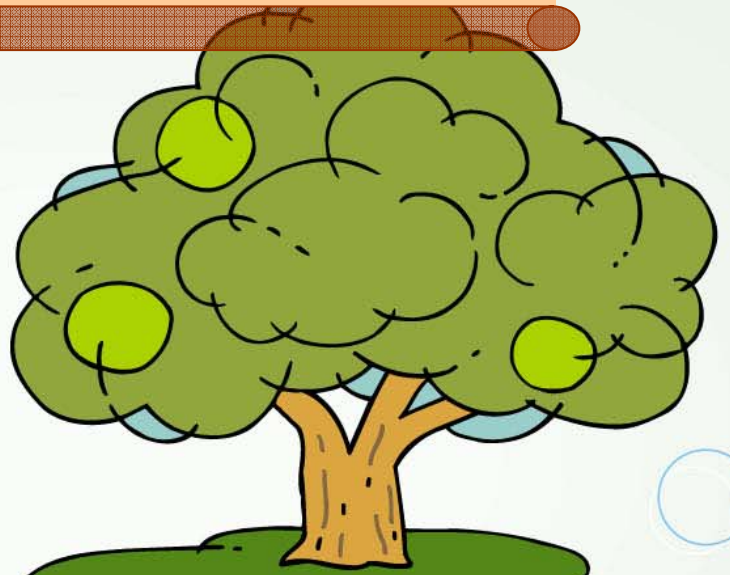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할 보험금 등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①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육아 일시금」, 「배우자 출산육아 일시금」
- ②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요양비」, 「가족요양비」, 「이송비」, 「가족이송비」,  
「고액요양비」
- ③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등에서 지급되는  
「상해비용보험금」, 「의료보험금」, 「입원급부금」
- ④ 의료비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D. 휴직이나 퇴직으로 수입이 감소하거나 없어졌을 때

질병이나 부상을 입으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 Q

### D-1 상병수당금에 대하여

#### 수속은?

#### D-1-1

상병수당금은 질병으로 인한 휴직중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업무 외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사업주(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지급됩니다.

수속

- \* 상병수당금의 청구는 요양 사실에 대한 **담당의사의 증명과** 휴직 기간중의 임금 지불상황에 대한 **사업주(회사)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보험증에 기재된 **사회보험사무소(→자료 1 참고)** 또는 **보험조합**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얼마나 지급되나요?

#### D-1-2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의 1 일당 표준보수일액(5 월부터 7 월까지 지급된 평균적인 급여를 일수로 나눈 것)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병수당금의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 ①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은 경우
- ② 상병수당금과 동일한 상병에 의해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③ 퇴직 후, 노령후생연금이나 노령기초연금 또는 퇴직공제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상기의 지급일액이 상병수당금의 일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병수당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병수당금의 일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이 지급됩니다.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치료의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 2007년 4월부터 실시 상병수당금 및 출산수당금의 재검토

상병수당금 및 출산수당금의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 2007년 4월부터 일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상병수당금의

상병수당금은 지금까지 「최고 1년 6개월 동안, 1일당 임금의 60% 상당액을 지급」이었으나, 2007년 4월부터는 「임금에 상여금을 반영한 수준의 금액을 지급 (임금의 3분의 2 상당액)」으로 변경됩니다.

상병수당금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중, 최초에 연속해서 쉰 3 일간을 대기기간으로 하고, 4 일째 이후에 지급됩니다. 지급기간은 1년 6 개월입니다.

### 2007년 4월부터 실시 상병수당금 및 출산수당금의 재검토

상병수당금 및 출산수당금의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 2007년 4월부터 일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상병수당금의

임의계속피보험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퇴직시에 계속급부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제외)

건강보험의 보험급부는 퇴직 등에 의해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에는 보험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급부를 받고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자격 상실일 전날까지 1년 이상 계속해서 피보험자였던 경우, 이미 받고 있는 상병수당금 및 출산수당금의 계속적인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Q****D-2 실직한 경우...실업수당****어떤 제도인가요?****D-2-1**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자가 퇴직 후, 노동 가능한 상태이며 의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실직중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언제 급부를 받을 수 있나요?****D-2-2**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①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1년간의 피보험자기간이 통산 6개월은 있을 것
- ② 실직상태이며 직업안정소(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에 구직 신청을 해 놓았을 것
- ③ 노동 가능한 상태이며 의욕도 있고, 취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일자리의 부재로 인하여 취직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것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일의 익일부터 1년간이지만, 기간 중에 출산, 질병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얼마나 지급되나요?

D-2-3

기본수당의 일액은 전 직장 평균임금 일액의 약 60~80%입니다.  
기본수당의 지급일수는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자료 3 참조)

### 그 외의 급부는?

D-2-4

고용보험제도에는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수당이 있습니다.

- 상병수당      구직을 신청했지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 기능습득수당      취직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 재취직수당      재취직이 조기에 결정되었을 경우
- 상용취직준비금      45 세 이상의 고·중연령자나 신체장애자로 취직이 결정된 경우
- 교육훈련급부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았을 경우

### 수속은?

D-2-5

거주지 관할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자료 4 참조)에서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이직표, 고용보험 피보험자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표, 사진(세로 3cm, 가로 2.5 cm), 인감을 지참하여 주십시오.





**Q****D-3 건강보험의 임의계속이란?****어떤 제도?****D-3-1**

회사 등을 퇴직하여 건강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의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임의계속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임의계속 피보험자가 되려면?****D-3-2**

퇴직일 익일까지 2 개월 이상 계속된 건강보험가입기간이 있을 것.  
퇴직일 익일부터 원칙적으로 20 일 이내에 임의계속 피보험자가 되기 위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임의계속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기간은?****D-3-3**

임의계속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기간은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2 년간입니다.



Q

## D-4 피보험자에서 피부양자가 될 경우의 수속

### 피부양자란?

D-4-1

건강보험에서는 피보험자(건강보험가입자)에 의해 부양을 받고 있는 자(피부양자)의 질병이나 부상, 출산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피부양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직계친족, 배우자(내연의 처를 포함), 자, 손, 형제자매, 주로 피보험자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피보험자와 동일세대에서 주로 피보험자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로 다음의 자

- (2) 피보험자의 삼촌 이내에 해당하는 친족으로 (1)이외의 자
- (3) 피보험자와 내연의 처 관계에 있는 자의 부모 및 자녀 등입니다.

###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D-4-2

조건으로는 급여의 총 지급액이 연간 130 만엔 미만이며, 동시에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연수입의 1/2 미만이어야 합니다. 월액으로 환산하면 약 10 만 8000 엔 정도가 기준입니다.

피부양자로서 인정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의 상실수속이 필요합니다. 보험증을 가지고 해당관청에서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피부양자로 인정된 경우, 국민연금도 제 1 호 피보험자에서 제 3 호 피보험자로 변경수속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금수첩과 보험증 등을 가지고 해당관청에서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Q****D-5** 연금을 빨리 받을 수 없나요?

연금의 조기지급

**D-5-1**

&lt;국민연금&gt;

원래 65 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60 세부터 앞당겨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지급 받는 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66 세부터 70 세 사이의 희망하는 연령부터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 받는 금액이 증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역의 국민연금 담당과, 사회보험사무소**(→자료 1 참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lt;후생연금&gt;

1940 년 4 월 1 일 이전에 출생한 여성은 55 세부터 특별지급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또는 수입이 적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보험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Q****D-6 생활보호를 받으려면?**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여, 자립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 여부는 세대의 경제상황으로 결정됩니다.

**<생활보호의 조건>**

세대 전체의 수입합계가 국가에서 정한 최저생활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일을 할 수 있을 경우나 자산가치가 있는 것(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가족 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보호의 종류와 내용>**

- ① 생활부조 의식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 ② 교육부조 의무교육에 필요한 교과서나 학용품, 급식비 등
- ③ 주택부조 주택임대료 등
- ④ 의료부조 의료서비스
- ⑤ 간호부조 간호서비스
- ⑥ 출산부조 출산에 필요한 것
- ⑦ 생업부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에 필요한 자금, 훈련비용 등
- ⑧ 장제부조 장의에 필요한 것 등

**<생활보호의 신청>**

보호를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거주지구의 민생위원, 또는 생활보호 담당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생활보호 신청의 흐름>**

생활보호 담당창구에서 면접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면접에서는 수입이나 자산의 유무, 친족의 상황 등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면접에서 생활보호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 후에는 생활보호 담당자가 자택을 방문하여, 생활상황을 파악하고 자산을 조사한 후, 보호를 결정합니다.

## E.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걱정될 때

“갑자기 근무하고 있던 회사가 도산하였다,”

“질병으로 일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

“불황으로 수입이 줄어 들었다”

이와 같이 생활의 변화를 초래하는 일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사태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항에서는 주택융자와 자녀의 학비,

사업자금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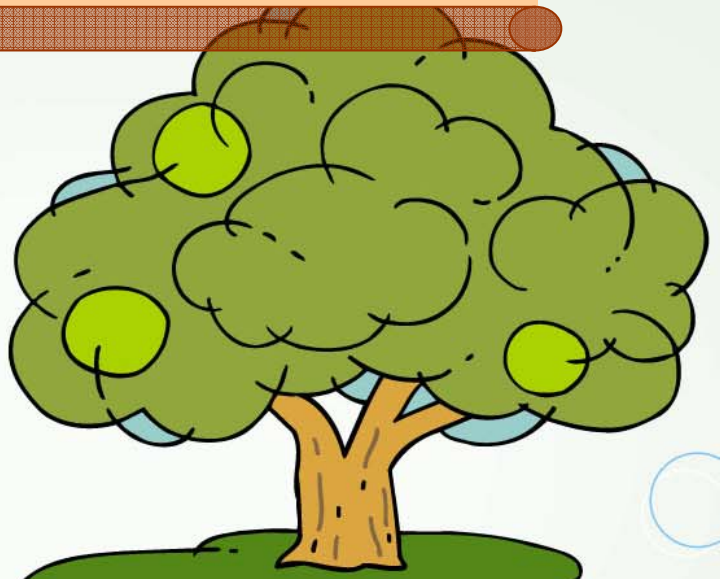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회정세 속에서

제도나 조직기구 등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 항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도 항상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활용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확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Q

## E-1 갑자기 수입이 없어진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E-1-1

장기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생활비나 치료비 등이 걱정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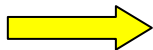
이러한 경우에 급여가 보장되는 것이 있습니다.

### 상병수당금(건강보험법)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자가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휴직할 경우에 급여를 대신하여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병수당금을 청구하려면 요양사실에 대한 담당의사의 증명과 휴직기간중의 임금지불상황에 대한 사업주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1 상병수당금에 대해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휴직보상금부(노동자재해보상보험)

노동자(고용된 자)가 **통근 또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이로 인해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휴직한지 3 일째까지는 사업주가 노동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휴직보상(임금의 대신)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4 일째부터는 본 제도(노동자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휴직보상금부의 지급액은 1 일당 \* 급부기초일액의 60%입니다.

또한, 노동복지사업에서 급부기초일액의 20%를 휴직특별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급부기초일액이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체불임금 대납제도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복지기구(2004년 4월 1일 이행)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자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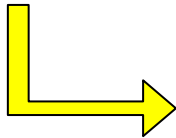
노동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임금을 받고 있는 자를 일컫습니다.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외국인이라도 조건이 맞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조건은?

- ① 도산한 날로부터 6개월 전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자일 것.
- ② 도산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청구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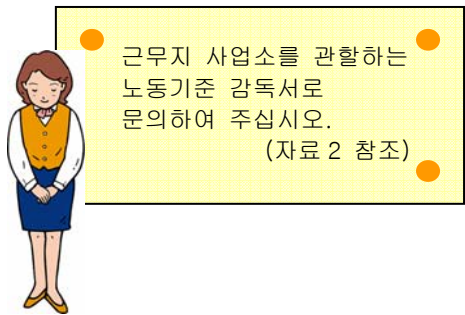
체불임금의 지급액은?

체불임금의 80%가 대납됩니다.



노동자의 퇴직일 6개월 전부터 체불임금의 대납을 청구한 전날까지 지불기일이 도래한(지불해야 할) 정기임금과 퇴직수당 중 체불된 것을 말합니다.  
보너스는 대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의 총액이 2만엔 미만인 경우나 상한액을 초과한 것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속은?



근무지 사업소를 관할하는 노동기준 감독서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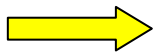
- \* 노동자의 조건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관한요건도 별도로 있습니다.
- \* 본 제도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회사의 도산이나 구조조정, 또는 질병으로 실직한 경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 수당의 지급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등급부제도(고용보험)

정년, 도산, 개인사정 등으로 이직한 자가 실직중의 생활을 걱정하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하루라도 빨리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의 일반피보험자(고용되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기본수당의 지급일수(→자료 3 참조)는 다양한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히 도산·해고 등으로 재취업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의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직하게 된 수급자격자(특정수급자격자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 이직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급부일수가 적용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2 실직한 경우…실업수당」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직업훈련

#### <구직자를 위한 공공직업훈련>

수강대상자는 고용보험의 기본수당의 수급자격이 있고,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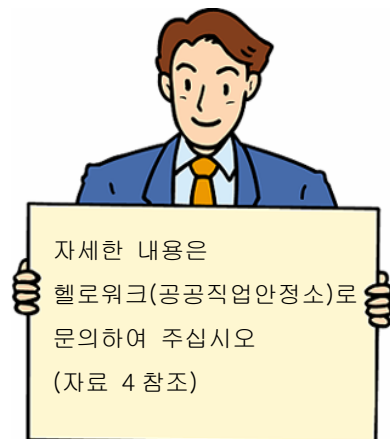
단, 직업안정소장으로부터 공공직업훈련 등의 수강이 필요하다는 지시를 받은 자입니다.

이 경우, 교과서와 교재비 등을 제외한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그 밖에도 <재직자를 위한 직업훈련> 등도 있습니다.

- 독립행정법인 고용·능력개발기구의 홈페이지에서 전국의 직업훈련코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www.ehdo.go.jp/>





## Q

## E-2 주택용자의 변제가 곤란한 경우

### 주택용자 계약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 E-2-1

주택용자 납부가 곤란한 사태에 대비하여, 각 은행 등에서도 계약시 이용자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단체신용생명보험

용자 이용자가 사망 또는 고도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받아서 차입금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불되지 않습니다.

#### 채무변제지원보험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기입원이나 재택요양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용자변제액 상당액이 보험금으로써 지불되는 시스템입니다.

지불되는 보험금액은 매월 변제할 원리금과 동일한 금액이거나 임의의 금액으로, 보험금이 용자로 총당되어 변제가 완료되는 시스템입니다.

#### 그 외의 보험

각 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용자관련 보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소득보상보험, 변제지불보험, 실직시의 생활지원보험, 용자변제지원보험 등

**\* 자세한 내용은 대출 받은 은행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주택용자의 변제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그 사이에 생활상황의 변화나 수입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종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택금융공고에서는 변제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건변경의 내용

- ① 보너스 지급월의 변경
- ② 변제일의 변경
- ③ 매월 변제분과 보너스 지급월 변제분의 남은 원금의 변경
- ④ 원리균등변제에서 원금균등변제로 변경,  
또는 원금균등변제에서 원리균등변제로 변경

변제방법의 신탁례

불황에 따른 도산 등 **근무처의 사정**으로 수입이 감소하여, 매월 변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변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처의 사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p>&lt;회사원의 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산에 의한 해고</li> <li>·구조조정에 의한 전직 및 퇴직</li> <li>·급여 및 보너스의 감액</li> <li>·초과근무삭감에 따른 수익감소 등</li> </ul>	<p>&lt;자영업의 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적부진에 의한 도산, 폐업</li> <li>·연쇄도산</li> <li>·대출경색에 의한 도산</li> <li>·수주저하에 의한 수익감소 등</li> </ul>
--	---

조건변경의 내용

- ① 변제기간연장(최장 10년)
- ② 변제기간연장(최장 10년) + 원금거치기간설정(최장 3년)

- \* 변제방법변경에는 수수료가 듭니다.
- \* 모든 경우에는 적용조건 등이 있으므로, 확인하여 주십시오.



**Q****E-3** 자녀의 학비가 걱정될 경우...

## 학자보험(어린이 보험)

**E-3-1**

학자보험이란 어린이의 교육자금의 적립과 보장을 겸비한 것입니다.

어린이의 사망보장, 또는 부모의 사망보장이 육영연금으로서 조합된 것과 어린이의 입원보증을 추가할 수 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교육자금의 적립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입원에 관한 보장을 단품의 의료보험이나, 부모의 계약에 「친자형」의 입원특약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보해 두는 것도 있습니다.

교육자금은 필요한 시기와 금액이 대략 정해져 있으므로, 계획적으로 자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여 준비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육영연금형식의 학자보험의 경우, 그 금액이나 수취방법에 따라서는 과세대상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육영연금을 수취할 권리, 즉 「연금수급권」이 발생하고, 상속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또한, 그 후에 육영연금을 매년 40만엔 이상을 받을 경우, 잡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어린이에게 매년 소득세가 과세되며, 유아라고 해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에게 소득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부양친족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자치체에 따라서는 모자가정에 대한 아동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할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시 신중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학금제도란 학습의욕과 능력이 있는 어린이들이 가정사정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진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스스로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신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연간수입과 어린이의 성적 등에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만,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에 진학할 경우의 학비 등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모의 실직 및 수입감소 등으로 학비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나 교육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2004년 4월 1일부터 일본학생지원기구가 발족되어 지금까지 구 일본육영회가 추진해 온 장학금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인물 및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신체 건강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학생에 대하여 학비를 대출하고 있습니다.**

무이자와 유이자(년 0.2%정도: 2004.3.31 현재)가 있습니다.

변제는 졸업한 이후부터이며, 교직이나 특정 연구기관에 근무할 경우, 변제가 면제될 경우도 있습니다.

장학금은 고등학교·대학교·단기대학·대학원 등에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의 표준학업기간에 걸쳐 대출됩니다.

일반적인 장학금과는 달리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 「**긴급채용 장학금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의 실직, 도산이나 화재 등에 의한 가계의 급변과 같이 긴급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이후의 고교장학금사업 예약채용 수속은 각 해당관청(토도부현)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 신문장학금

신문사가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제도입니다. 신문배달을 함으로써 학비를 지원 받는 제도입니다.

학비 이외에 급여지급과 주택(사원기숙사)등 생활면의 지원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신문장학회 및 육영회에 따라 적용지역과 응모자격, 장학금액 등의 조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직접 문의하여 주십시오.

(2004년 3월 현재)

아사히 장학회(아사히신문)	사무국(도쿄) 0120-127-733 (월~금 10:00~18:00)
산케이신문 장학회(산케이신문)	사무국(도쿄) 0120-03-3933 (월~금 10:00~17:30)
도쿄신문 장학회(도쿄신문)	사무국(도쿄) 0120-18-3751 (월~토 10:00~18:00)
일본경제신문 육영장학회	사무국(도쿄) 0120-00-5725 (월~토 9:30~17:30)
마이니치 육영회(마이니치신문)	사무국(도쿄) 0120-098-098 (월~금 10:00~18:00)
요미우리 육영장학회(요미우리신문)	사무국(도쿄) 0120-430-116

## 아시나가 육영회

병, 재해, 자살 등으로 보호자를 잃거나, 심한 후유장애로 보호자가 일할 수 없는 가정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 제도입니다.

장학금은 고등학교, 대학교, 전수·각종학교, 대학원 등의 4 종류, 입학 일시금은 사립고등학교, 사립대학교의 2 종류이며, 각각의 대출금액과 대상이 다릅니다. 장학금 및 입학금은 무이자로, 대출이 종료되고 6개월 후부터 반환합니다.



## 지방자치체에 의한 장학금제도

시즈오카현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체의 장학금제도에 대해서는 아래에 게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지정의 장학금제도가 있으므로, 각 학교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시즈오카현의 자치체 장학금제도

(2004년 3월 현재)

명칭	담당부서	전화	월액	대여/급여
시즈오카시 장학금	시즈오카시 교육위원회 교직원과	0543-54-2509	20,000	대여
시즈오카시 아츠시 장학금	"	"	100,000 (입학시)	급여
아타미시 육영장학금	아타미시 교육위원회 학교교육과	0557-81-0151 (내선 541)	39,000	대여
이토시 육영장학금	이토시 교육위원회 관리과 경리시설계	0557-36-0111 (내선 2842)	20,000	급여 대여
고텐바시 육영장학금	고텐바시 교육위원회 학교교육과	0550-82-4534	30,000	대여
스소노시 육영장학금	스소노시 교육위원회 학교교육과	055-992-1111	(입학금) 300,000 30,000	대여
누마즈시 육영장학금	누마즈시 교육위원회 학교교육과	055-931-2500	10,000	급여
하마마츠시 육영장학금	하마마츠시 교육위원회 학교교육부 총무과 서무계	053-457-2401	40,000	대여
야이즈시 장학금	야이즈시 복지보건부 복지총무과	054-626-1117	22,000	대여

## 대학에서의 장학금제도

최근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모의 실직과 수입감소 등으로 학비납부가 곤란한 학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하여, 각 지역의 사립대학에서는 종래 장학금제도의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교육용자금의 보증인이 되어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교육용자에는 국가의 교육용자나 민간용자기관에서 취급하는 교육용자가 있습니다. 「국가의 용자」에는 교육일반대출, 우체국저금대출, 연금교육대출이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심사가 있습니다만, 가계가 파탄된 후에는 대출 받기가 곤란하므로, 조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은행에 따라 용자금액이나 금리가 다르므로, 비교 검토하여 주십시오.

이 밖에도 각 자치체의 교육자금 용자제도도 있습니다. 용자금액은 소액이지만 금리가 낮은 편이므로, 자금이 조금 모자랄 경우에는 가까운 해당관청의 상공과 등에서 조건을 조사하여 주십시오.

국민생활금융공고

<교육일반대출>

용자대상 학교(고등학교·대학교·전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의 보호자가 용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는 세대의 연간 수입이 급여소득자의 경우 990 만엔 이내, 사업소득자의 경우 770 만엔 이내인 자가 대상입니다.

용자액은 학생 1 인당 200 만엔 이내입니다.

사용용도는 학교납부금(입학금·수업료 등), 입학시험에 든 비용, 주거에 드는 비용, 교과서 대금, 교재 대금, 컴퓨터 구입비, 통학비용, 학생의 국민연금 보험금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입니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고등학교나 전문학교 등도 대상에 해당됩니다.

(2004년 3월 15일 현재)

시즈오카지점	우편번호 420-0034	시즈오카시 토키와초 2-5-1	(054) 254-4411
하마마츠지점	우편번호 430-0917	하마마츠시 토키와초 132-14	(053) 454-2341
누마즈지점	우편번호 410-8585	누마즈시 이치바초 5-7	(055) 931-5281

일본우정공사

<우체국저금대출> 「교육적립 우체국저금」에 예금하고 있는 자로서, 일본우정공사가 알선한 자가 용자 대상입니다. 용자액은 학생 1 인당 200 만엔 이내입니다.

---

## 연금복지사업단(연금자금 운용기금)

---

### <연금교육대출>

후생연금·국민연금의 연금적립금을 원자금으로, 국민생활금융공고가 「국가의 용자」의 일부로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후생연금 또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연금자금 운용기금의 알선을 받은 자가 용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독립행정법인 고용·능력개발기금(2004년 3월 1일 설립)

---

### <재형교육용자제도>

재형저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교육자금으로써 용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자는 본인 또는 친족의 진학·학업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대상입니다.

---

## 노동금고

### <교육용자>

노동금고에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일반노동자 등이 교육자금으로써 용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노동금고 영업소의 창구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 각 금융기관

### <교육용자>

각 은행 등에서도 교육용자 상품이 있지만 각각 조건 등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은행·신용금고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이곳에서는 제도의 테두리를 넘어, 어린이의 학비로써 보상되는 것과 교육자금의 용도로 받을 수 있는 대출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노동재해 취학원호비 · 노동재해 취로 보육원호비(노동자 재해보상)**

노동재해로 인해 심한 후유장애자가 된 자나 사망한 자의 유족 중,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노동재해 취학원호비가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자는 상병(보상)연금, 장애등급 1~3 급의 장애(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 또는 그 가족입니다.

지급액(2004년 3월 1일 현재)

초등학생 월액 12,000 엔, 중학생 월액 16,000 엔

고등학생 월액 18,000 엔, 대학생 월액 36,000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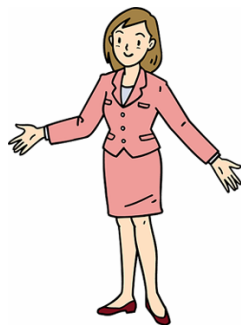
수속은 「노동재해 취학등 원호비 지급신청서」에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근무처의 사업소를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서에 청구합니다.

매년 2·5·8·11월에 3개월분씩

연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또한, 보육원아에 대해서도 월액 12,000 엔의 노동재해 취로 보육원호비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무처의 사업소를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서로 문의하여 주십시오.(자료 2 참조)



## 생활복지자금(사회복지협의회)

생활복지자금에서는 다른 기관에서의 대출이 곤란한 **저소득자·장애자·고령자 세대 해당자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나 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수학자금에는 수학비와 취학준비금이 있습니다.

**수학비란** 저소득 세대 해당자가 학교교육법에 규정된

고등학교(맹학교·농학교·양호학교고등부·전수학교 고등과정을 포함), 대학교,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에 취학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취학준비금이란** 입학금으로써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납입한 경우에는 제외)

상환기간은 최장 14년 이내로, 졸업 후 6개월을 거치기간으로 합니다.

무이자이며, 원리균등 월부변제입니다.

신청시에는 신분이 확실한 연대보증인(가족이 있는 세대주) 1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소득제한 등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생활복지자금에는 수학자금 외에도 **갠생자금, 장애자 갠생자금, 복지자금, 장애자 복지자금, 장애자 자동차 구입자금, 주택자금, 요양·개호자금, 재해원호자금, 이직자 지원자금, 긴급소액자금**의 총 10 종류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2004년 3월 1일 현재)

수학비(월액) ※신청시의 학년이 1학년인 경우								
학교종별	고등·전수학교 (고등과정)		고등전문학교		단대·전수학교 (전문과정)		대학교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자택 통학	18,000	30,000	21,000	32,000	44,000	52,000	44,000	53,000
자택외 통학	23,000	35,000	25,000	35,000	50,000	59,000	50,000	63,000

취학준비금(입학금만)								
학교종별	고등·전수학교 (고등과정)		고등전문학교		단대·전수학교 (전문과정)		대학교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입학금	75,000	290,000	75,000	290,000	370,000	440,000	370,000	440,000



**모자과부 복지자금의 대출(해당관청 모자복지 담당과)**

모자가정 및 과부의 생활안정과 그 자녀의 복지를 위한 융자제도입니다.  
 본 융자는 물적 담보는 필요 없지만, **보증인이 1명 필요합니다.**  
 대출은 무이자라 많으며, 변제기간도 긴 편입니다.

- 과부란, 한때 모자가정의 모친에 해당했던 자로,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수학자금이란** 자녀를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에 수학시키기 위한 자금입니다.  
 원칙적으로 모친이 임차인이며, 자녀가 연대임차인이 되지만,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거치기간은 졸업 후 6개월,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무이자입니다.

(2004년 3월 1일 현재)

수학자금(월액)								
학교종별	고등·전수학교 (고등과정)		고등전문학교		단대·전수학교 (전문과정)		대학교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자택 통학	18,000	30,000	21,000	32,000	44,000	52,000	44,000	53,000
자택외 통학	23,000	35,000	25,000	35,000	50,000	59,000	50,000	63,000

**취학준비자금이란** 자녀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에 입학할 때 필요한 자금입니다.  
 원칙적으로 모친이 임차인이며, 자녀가 연대임차인이 되지만,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거치기간은 졸업 후 6개월,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무이자입니다.

(2004년 3월 1일 현재)

취학준비자금				
학교종별	고등·고등전문학교·전수학교 (고등과정)		대학교·단대·전수학교 (전문과정)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입학금	75,000	290,000	370,000	440,000

상기 이외에도 생활자금, 주택자금, 의료개호자금, 수업자금, 취직준비자금, 결혼자금, 기능습득자금, 사업개시자금, 사업계속자금, 이사자금, 특례아동부양자금 등, 합계 13 종류의 대출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각 해당관청의 모자복지담당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Q**

**E-4 장사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변제가 곤란한 경우**

**국민생활금융공고의 용자**

**E-4-1**

정부계 금융기관인 국민생활금융공고에서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통대출**

거의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자 등이 이용 가능합니다.

(2004년 3월 10일 현재)

자금용도	운전자금	설비자금	특정설비자금
용자액	4,800 만엔 이내		7,200 만엔 이내
변제기간 (거치기간)	5년 이내 (1년 미만)	10년 이내 (2년 이내)	20년 이내 (2년 이내)
이율	년 1.65%		

\*용자시의 보증인·담보 또는 신용보증협회의 보증에 대해서 국민생활금융공고에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영개선대출**

상공회의소나 상공회 등의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자 등이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무보증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04년 4월 1일 현재)

자금용도	운전자금	설비자금
용자액	550 만엔 이내	
변제기간 (거치기간)	4년 이내 (6개월 이내)	6년 이내 (6개월 이내)
이율	년 1.3%	
취급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 신규개업대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자 또는 신규로 개업하여 약 5년 이내인 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04년 3월 10일 현재)

융자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1.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시작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 6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과 동일 업종에서 통산 6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2. 대학 등에서 습득한 기능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종에 2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자로, 그 직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의 사업을 시작하는 자 3. 기술이나 서비스 등에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는 자 4. 고용 창출을 동반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자 5. 1~4에 의해 신규로 개업하여 약 5년 이내인 자
자금용도	운전자금
융자액	4,800 만엔 이내
변제기간 (거치기간)	7년 이내 (1년 이내)
이율	년 1.65%
취급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 보증인, 담보 또는 신용보증협회의 보증이 필요.

상기 이외에도 여성이나 중, 고령의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융자도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시즈오카지점	우편번호 420-0034	시즈오카시 토키와초 2-5-1	(054) 254-4411
하마마츠지점	우편번호 430-0917	하마마츠시 토키와초 132-14	(053) 454-2341
누마즈지점	우편번호 410-8585	누마즈시 이치바초 5-7	(055) 931-5281



기업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하지만, 그 규모는 천차만별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각종 용자제도는 기업이 도산할 경우에 사회적 영향이 클 때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참고로 기재하였습니다.)

**사업재생자금 용자제도(일본정책 투자은행)**

일본정책 투자은행에서는 민사 재생법, 회사 갱생법 등의 사법 프로세스, 또는 「사적정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적정리를 통하여, 사업가치 보전자금(DIP 파이낸스), 사업기반 정비자금을 용자하고 있습니다.  
 적용조건을 충족해야만 용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재생 지원자금(중소기업 금융공고)**

지역경제의 산업활력유지에 공헌하거나 기술력 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 ① 민사 재생법에 근거한 재생계획의 인가결정 등을 받은 경우  
 주식회사 정리회수기구가 재생의 가능성을 인정하여 재생계획이 책정되고, 원칙적으로 채권자 전원의 합의를 얻은 경우 등
- ② 도산한 기업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태의 기업 등으로부터 영업양도 등을 통해 사업을 승계할 경우로서, 승계시에 민간금융기관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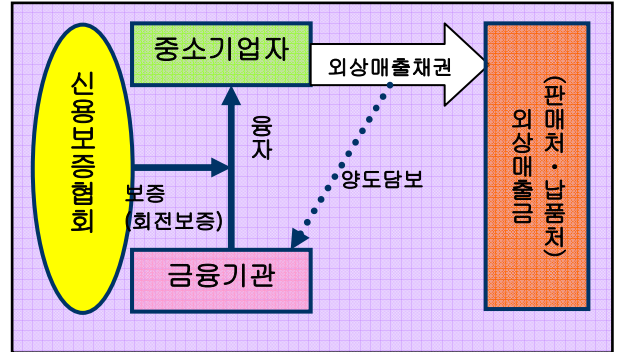


**외상매출채권담보 융자보증제도(경제산업성 중소기업청)**

경제산업성에서는 각각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에 신용보증협회가 보증을 서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중소기업가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본 제도에 따라 신용보증협회에 보증을 신청합니다.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가가 차입금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보증협회가 금융기관에 대출잔고의 90%를 대위변제함과 동시에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협회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대금 회수에 나섭니다.



**이용대상자**

신용보증협회의 이용 가능한 중소기업자와 동일합니다.

(제조업에서는 자본금 3억엔 이하의 회사 등)

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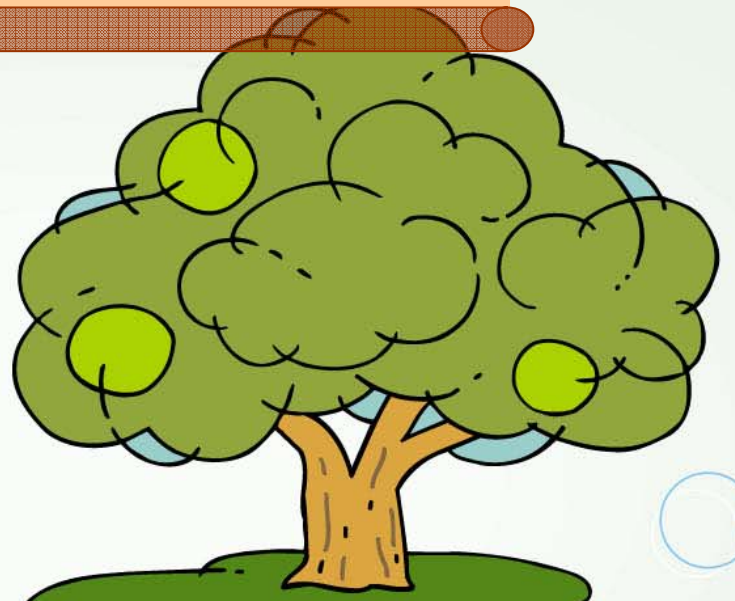
- \*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채권의 종류...외상매출금채권, 할부판매대금채권, 운송료채권, 공사청부대금채권 등(외상매출처의 사업자에게 지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이 대상. 양도금지특약의 외상매출채권은 제외. 외상매출처로부터 해제승낙서를 제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융자내용**

- 본 제도에서 설정 가능한 차입한도액은 1억 1,100만엔이지만, 융자희망액, 외상채권의 상황 등에 따라 중소기업자 별로 대출한도액이 설정됩니다.
- 중소기업자는 그 범위 내에서 1년간 반복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상채권을 담보로써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채권양도등기제도에 따른 등기가 필요합니다.
- 외상채권은 외상처가 도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실제의 외상금액 전액을 융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담보인증비율이 적용됩니다.)  
담보인증비율은 양도담보의 보전방법, 외상매출처의 신용도 등에 따라 외상매출채권 별로 다릅니다.

## F. 그 밖에 이용 가능한 제도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다양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일부로써  
소아 만성특정질환 치료연구사업과  
특정질환 치료연구사업,  
신체장애자 수첩제도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Q****F-1 소아 만성특정질환 치료연구사업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아동의 만성질환 중 특정 질환에 대해서 그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료비의 자기부담분)을 공비로 부담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아동의 심신과 관련된 건전한 육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제도입니다.

해당하는 질환은?

**F-1-1****<질환군명>**

악성신생물(암), 만성신질환, 천식, 만성심질환, 내분비질환, 교원병, 당뇨병, 선천성대사이상, 만성혈액질환, 신경·근질환

상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아 만성특정질환 치료연구사업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질병은 약 500 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창구의 건강복지센터(보건소)(→자료 5 참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소아 만성특정질환 치료연구사업」의 일부 재편이 2004년 10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 필요한 서류는?

F-1-2

- 신청서
- 의사의 진단서(소정의 용지가 건강복지센터(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인감
- 보험증

## 어디에 신청하나요?

F-1-3

본 제도는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거주지를 관할하는 건강복지센터(보건소)(→자료 5 참조)에 신청서 및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 기타

F-1-4

신규 신청은 18 세 미만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질환에 따라서는 유효기간을 20 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비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 년 이내이므로, 계속해서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수속을 해야 합니다. 질병의 상황 등이 인정기준을 만족시키는지의 여부를 전문의가 심사하므로, 신청하더라도 공비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진료권이 발행됩니다.

**Q****F-2 특정질환 치료연구사업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원인불명으로 치료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장기간에 걸쳐 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병에 대해서, 그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료비의 자기부담분)을 공비로 부담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하는 질환은?****F-2-1**

시즈오카현에서는 49 개의 질환이 특정질환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자료 6 참조)

**필요한 서류는?****F-2-2**

필요한 서류는 건강복지센터(보건소)의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청서
- 임상조사 개인표
- 세대전원이 기재된 주민표
- 원천징수표 사본 등 소득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한, 중증환자로서 전액 공비 부담을 신청하려면,

- 중증환자 인정 신청서
- 중증환자 인정 신청용 진단서

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F-2-3**

본 제도는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거주지를 관할하는 건강복지센터(보건소)(→자료 5 참조)에 신청서 및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특정질환 중에서 스몬,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난치성 간염으로 극중간염 및 중증급성체염 환자 및 중증환자로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전액 공비부담이며, 의료비의 자기부담은 없습니다.

그 외 특정질환은 소득에 따라 일부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자료 7 참조)



**Q**

**F-3 신체장애자 수첩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F-3-1**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신체장애자 복지법에 규정한 정도의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 받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의의 진단서에 따라 신체장애자 갱생상담소가 심사를 담당하고, 장애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 신체장애자 수첩이 교부됩니다.

**【장애의 내용】**

- 시각장애(눈의 부자유)
- 청각장애(귀의 부자유)
- 평형기능장애(균형기능의 부자유)
- 음성·언어기능장애(음성 또는 언어의 부자유)
- 지체부자유(손·발 등의 부자유)
- 내부장애(심장, 신장, 호흡기, 방광·직장, 소장, 면역기능의 장애)

**신청시기**

증상이 고정(개선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된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대략 3~6 개월 후가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F-3-2**

신청내용	* 진단서 (소정양식)	사진 (세로 4cm×가로 3cm 1 장) (해당지역에 따라 2 장)	인감	신체장애자 수첩
신규신청	○	○	○	—
등급의 변경	○	○	○	○
장애의 추가	○	○	○	○
재인정	○	○	○	○
분실·파손	—	○	○	○ (파손의 경우)
주소·이름 변경	○	—	○	○
현내 타지역으로부터의 전입(시즈오카시 및 하마마츠시를 제외)	—	—	○	○
다른 토도부현(행정구역단위)으로 부터의 전입(시즈오카시 및 하마마츠시를 포함)	—	○ (시즈오카현의 수첩을 작성할 경우)	○	○
반환(사망 등)	—	—	○	○

\* 지정의사가 기재한 진단서

###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F-3-3

해당관청의 복지담당과에서 신청합니다.

### 수첩을 교부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F-3-4

복지서비스를 받으려면 신체장애자 수첩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수첩을 가지고 있으면 각종 복지서비스를 받기 쉽습니다. 또한, 각종 세금의 공제나 감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 가능한 서비스(내용은 수첩의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갱생·육성의료의 급부, 중증 심신장애자(아) 의료비 지원, 보장구의 교부와 수리, 일상생활 용구의 급부, 주택 개조비의 지원, 홈헬퍼·Day 서비스·단기 서비스의 이용, 철도나 배·버스·택시·항공운임의 할인, 세금의 면제, 자동차 개조비의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득비의 지원, NHK 방송수신료의 감면 등입니다.

이상이 주요 서비스입니다. 거주지역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역의 복지담당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자료편

자료 1 사회보험사무소 일람(시즈오카현)

자료 2 노동기준감독서 일람(시즈오카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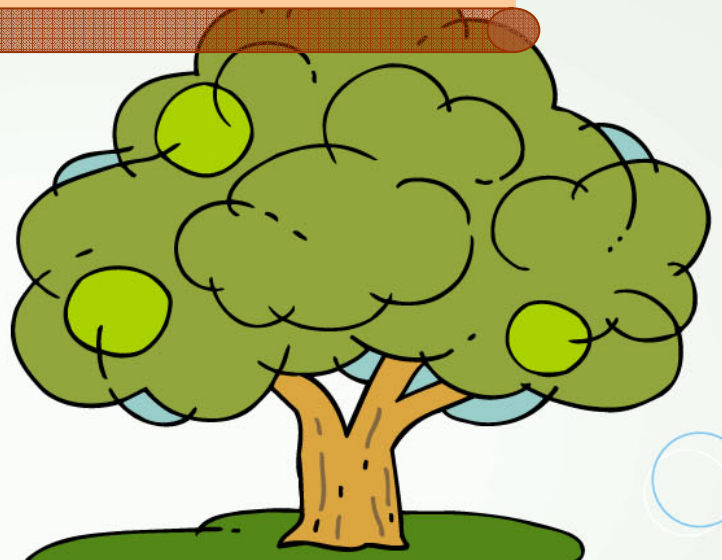
자료 3 기본수당의 급부일수(고용보험)

자료 4 헬로워크 일람(시즈오카현)

자료 5 건강복지센터 일람(시즈오카현)

자료 6 특정질환 치료연구사업대상 질환일람

자료 7 특정질환환자 일부부담액



자료 1

사회보험사무소 일람(시즈오카현)

(2004년 3월 현재)

사회보험사무소명	우편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카케가와※	우편번호 436-8653	0537-21-5520
	카케가와시 쿠보 1-19-8	
시즈오카	우편번호 422-8668	054-284-4311
	시즈오카시 나카다 2-7-5	
시미즈	우편번호 424-8691	0543-53-2231
	시즈오카시 시미즈토모에초 4-1	
하마마츠 히가시	우편번호 435-8619	053-421-0565
	하마마츠시 텐류가와초 188	
하마마츠 니시	우편번호 432-8626	053-456-8511
	하마마츠시 타카마치 302-1	
누마즈	우편번호 410-8655	055-921-2201
	누마즈시 히노데초 1-40	
미시마	우편번호 427-8666	055-973-1166
	미시마시 코토부키초 9-44	
시마다	우편번호 427-8666	0547-36-2211
	시마다시 사이와이마치 2008-24	
후지	우편번호 416-8654	0545-61-1900
	후지시 요코와리 3-5-33	

※ 는 시즈오카 사회보험사무국 카케가와사무소입니다.



자료 2

노동기준감독서 일람(시즈오카현)

(2004년 3월 현재)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관할구역
하마마츠 노동기준감독서	하마마츠시 모토우오쵸 146	053-456-8147	하마마츠시·텐류시·하마키타시·코사이시·하마나군·이와타군 중 사쿠보쵸·사쿠마쵸 타츠야마무라·토요오카무라
이와타 노동기준감독서	이와타시 미츠키 3599-6	0538-32-2205	이와타시·카케가와시·후쿠로이시·오가사군·슈치군·이와타군(하마마츠 노동기준감독서 관할구역을 제외)
시마다 노동기준감독서	시마다시 혼도오리 1-4677-4 시마다 노동종합청사 3층	0547-37-3148	시마다시·후지에다시·야이즈시·시다군·하이바라군
시즈오카 노동기준감독서	시즈오카시 오우테마치 9-50 시즈오카 지방합동청사 5층	054-252-8105	구 시즈오카시
시미즈 노동기준감독서	시즈오카시 시미즈마츠바라쵸 2-15 시미즈 합동청사 3층	0543-51-8800	구 시미즈·이하라군
후지 노동기준감독서	후지시 미유키쵸 13-28	0545-51-2255	후지시·후지노미야시·후지군
누마즈 노동기준감독서	누마즈시 이치바쵸 9-1 누마즈 합동청사 4층	055-933-5830	누마즈시·고텐바시·스소노시·순토군
미시마 노동기준감독서	미시마시 분교쵸 1-3-9	055-986-9100	미시마시·아타미시·이토시 타가타군
미시마 노동기준감독서 시모다 주재사무소	시모다시 니시혼고 2-5-33 시모다 지방합동청사	0558-22-0649	시모다시·카모군

**자료 3**

**기본수당의 급부일수(고용보험)**

(2004년 3월 현재)

1. 도산·해고 등으로 인한 이직자 (3을 제외)

구분 \ 피보험자였던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세 미만	90 일	90 일	90 일	90 일	—
30세 이상 45세 미만		90 일	180 일	210 일	240 일
35세 이상 45세 미만				240 일	270 일
45세 이상 60세 미만		180 일	240 일	270 일	330 일
60세 이상 65세 미만		150 일	180 일	210 일	240 일

2. 도산, 해고 등 이외의 사유로 인한 이직자(3을 제외)

구분 \ 피보험자였던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전연령	90 일		90 일	120 일	150 일

3. 취직곤란자

(신체장애자, 지적장애자, 사회적 사정으로 인해 취직이 현저하게 어려운 자 등)

구분 \ 피보험자였던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45세 미만	150 일	300 일			
45세 이상 65세 미만		360 일			

자료 4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일람(시즈오카현)

(2004년 4월~)

	소재지	전화번호	관할구역
헬로워크 시모다	우편번호 415-8509 시모다시 4-5-36	0558-22-0288	시모다시·카모군
헬로워크 미시마	우편번호 411-0033 미시마시 분교초 1-3-112 03년 6월 30일~05년 3월 30일까지 임시청사 이전장소 :미시마시 분교초 1-3-13	055-980-1300	미시마시·타가타군
헬로워크 이토	우편번호 414-0046 이토시 오오하라 1-5-15	0557-37-2605	이토시
헬로워크 아타미	우편번호 413-0011 아타미시 타하라촌초 9-1 아타미 다이이치 빌딩 4층	0557-82-3261	아타미시
헬로워크 누마즈	우편번호 410-0831 누마즈시 이치바초 9-1 (누마즈 지방합동청사 1층)	055-931-0145	누마즈시·스소노시 시미즈초·나가이즈미 초
헬로워크 고텐바	우편번호 412-0039 고텐바시 카마도 1111	0550-82-0540	고텐바시·오야마초
헬로워크 후지	우편번호 417-8609 후지시 미나미마치 1-4	0545-51-2151	후지시
헬로워크 후지노미야	우편번호 418-0031 후지노미야시 칸다가와초 14-3	0544-26-3128	후지노미야시·후지군
헬로워크 시미즈	우편번호 424-0825 시즈오카시 시미즈마츠바라초 2-15 (시미즈 지방합동청사 1층)	0543-51-8609	시즈오카시 시미즈 이하라군
헬로워크 시즈오카	우편번호 422-8045 시즈오카시 니시지마 235-1	054-238-8609	시즈오카시 (시즈오카시 시미즈 이외)
헬로워크 플라자 나비	우편번호 420-0853 시즈오카시 오우테마치 5-4 아반네트 시즈오카 오우테마치 빌딩 1층	054-253-4830	
헬로워크 야이즈	우편번호 425-0028 야이즈시 에키키타 1-6-22	054-628-5155	야이즈시·후지에다시 ·시다군
헬로워크 시마다	우편번호 427-8509 시마다시 혼도오리 1-4677-4	0547-36-8609	시마다시·카나야초· 카와네초·나카카와네 초·혼카와네초
헬로워크 하이바라	우편번호 421-0421 하이바라군 하이바라초 호소에 4138-1	0548-22-0148	요시다초·하이바라초 ·사가라초·구 오마에자키초 지역
헬로워크 카케가와	우편번호 436-0073 카케가와시 카네시로 71	0537-22-4185	카케가와시·오가사군
헬로워크 이와타	우편번호 438-0086 이와타시 미츠키 3599-6 (이와타 지방합동청사 1층)	0538-32-6181	이와타시·후쿠로이시 ·모리마치·아사바초 ·후쿠데초·류요초· 토요다초

	소재지	전화번호	관할구역
헬로워크 텐류	우편번호 431-3311 텐류시 후타마타쵸 아쿠라 8-5	0539-25-4108	텐류시 · 하루노쵸 · 사쿠마쵸 · 미사쿠보쵸 · 토요오카무라 · 타츠야마무라
헬로워크 하마마츠	우편번호 432-8537 하마마츠시 아사다쵸 50-2	053-457-5151	하마마츠시 · 하마키타시 · 코사이시 · 하마나군
헬로워크 호소에	우편번호 431-1302 이나사군 호소에쵸 히로오카 312-3	053-522-0165	이나사군 · 하마마츠시 중 미야코다쵸 신미야코다쵸 · 타키사와쵸 와시자와쵸 · 하마키타시 중 신바라 · 미야구치 오이다이라 · 하이노키 · 호리야 윤다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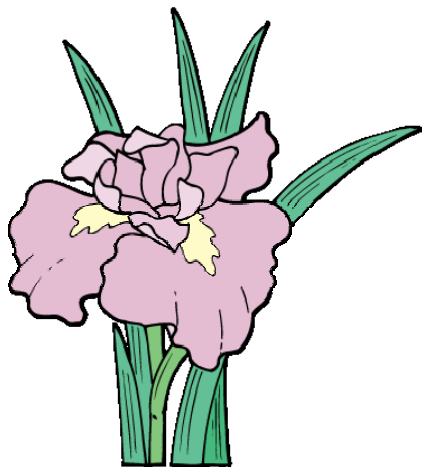
자료 5

건강복지센터 일람)

(2004년 4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FAX 번호	관할구역
이즈 건강복지센터 (이즈 보건소)	우편번호 415-0061 시모다시 나카 531-1	0558-24-2032 0558-24-2159	시모다시 · 히가시이즈쵸 · 카와즈쵸 · 미나미이즈쵸
마츠자키 보건지원실	우편번호 410-3624 카모군 마츠자키쵸 에나 255-3	0558-42-1262 0558-42-1558	마츠자키쵸 · 니시이즈쵸 · 카모무라
아타미 건강복지센터 (아타미 보건소)	우편번호 413-0016 아타미시 미나구치쵸 13-15	0557-82-9106 0557-82-9193	아타미시 · 이토시
토부 건강복지센터 (토부 보건소)	우편번호 410-8543 누마즈시 타카시마혼쵸 1-3	055-920-2073 055-920-2191	누마즈시 · 미시마시 · 스소 노시 · 이즈나가오카쵸 · 칸 나미쵸 · 니라야마쵸 · 시미 즈쵸 · 나가이즈미쵸
슈젠지 지소	우편번호 410-2413 이즈시 코다치노 24-1	0558-72-2310 0558-72-2853	이즈시 · 헤다무라 · 오오히 토쵸
고텐바 건강복지센터(고텐바 보건소)	우편번호 412-0039 고텐바시 카마도 1113	0550-82-6687 0550-82-4345	고텐바시 · 오야마쵸
후지 건강복지센터 (후지 보건소)	우편번호 416-0906 후지시 모토이치바 441-1	0545-65-2151 0545-65-2288	후지시
후지노미야 지소	우편번호 418-0068 후지노미야시 유타카쵸 18-5	0544-27-1131 0544-23-3493	후지노미야시 · 시바카와쵸
시다하이바라 건강복지센터(시다하 이바라 보건소)	우편번호 426-8664 후지에다시 세토아라야 362-1	054-644-9267 054-644-4471	야이즈시 · 후지에다시 · 오 카베쵸 · 오오이가와쵸 · 시 마다시 · 카나야쵸 · 카와네 쵸 · 나카카와네쵸 · 훈카와 네쵸
하이바라 지소	우편번호 421-0421 하이바라군 하이바라쵸 시즈나미 2128-1	0548-22-1151 0548-22-5840	사가라쵸 · 하이바라쵸 · 요 시다쵸
이하라 분청사	우편번호 424-8501 시즈오카시 시미즈초지 4-4-17	0543-67-1141 0543-66-2575	후지카와쵸 · 칸바라쵸 · 유 이쵸
나카토엔 건강복지센터 (나카 토엔 보건소)	우편번호 438-0086 이와타시 미츠키 3599-4	0538-37-2243 0538-37-2241	이와타시 · 후쿠로이시 · 모 리마치 · 아사바쵸 · 후쿠데 쵸 · 류요쵸 · 토요다쵸
카케가와 지소	우편번호 436-0073 카케가와시 카네시로 93	0537-22-2243 0537-22-9217	카케가와시 · 오오스카쵸 · 오마에자키시 · 오가사쵸 · 키쿠가와쵸 · 다이토쵸
호쿠엔 건강복지센터 (호쿠 엔 보건소)	우편번호 431-3314 텐류시 후타마타쵸 후타마타 530-19	0539-25-3141 0539-25-1206	텐류시 · 하루노쵸 · 토요오 카무라 · 타츠야마무라 · 사 쿠마쵸 · 미사쿠보쵸
세이부 건강복지센터 (세이부 보건소)	우편번호 430-0915 하마마츠시 히가시타마치 87	053-458-7174 053-458-7164	하마키타시 · 코사이시 · 마 이사카쵸 · 아라이쵸 · 유토 쵸 · 호소에쵸 · 이나사쵸 · 밋카비쵸

하마나 분청사	우편번호 431-0302 하마나군 아라이초 아라이 3447	053-594-3661 053-594-3075	
시즈오카시 · 보건복지부 보건예방과 · 의료원 호담당	우편번호 420-0853 시즈오카시 오우테마치 10-100	054-255-7811	시즈오카시
하마마츠시 · 보건복지부 보건소 · 보건예방과	우편번호 432-8023 하마마츠시 카모에 2 초메 11-2	053-453-6111 053-453-6124	하마마츠시



자료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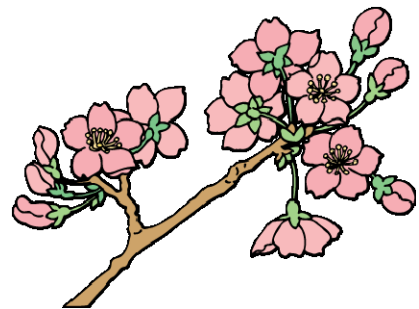
특정질환 치료연구사업대상 질환일람

질환 번호	질환명	질환 번호	질환명
1	베체트병	26	돌발성 확장형(울혈형) 심근증
2	다발성경화증	27	다계통 위축증
3	중증근무력증	28	표피 수포증 (접합부형 및 영양 장애형)
4	전신성 에리테마토데스	29	농포성 건선
5	스몬	30	광범 척주관 협착증
6	재생 불량성 빈혈	31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
7	사르코이도시스	32	중증 급성체염
8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33	돌발성 대퇴골두 괴사증
9	강피증·피부근염 및 다발성근염	34	혼합성 결합조직병
10	돌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35	원발성 면역부전증후군
11	결절성 동맥 주위염	36	특발성간질성폐렴
12	궤양성 대장염	37	망막색소변성증
13	대동맥염 증후군	38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14	버거병	39	원발성 폐고혈압증
15	천포창	40	신경섬유종증
16	척수소뇌변성증	41	아급성 경화성 전뇌염
17	클론병	42	버드-키아리 증후군
18	극증간염	43	특발성 만성 폐혈전색전증
19	악성 관절 류마치스	44	라이소좀병
20	파킨슨병 관련질환	45	부신백질이영양증
21	아미로이도시스	52	하시모토병
22	후종인대골화증	53	하수체 기능장애
23	헌팅턴병	54	돌발성 난청
24	모야모야병	99	선천성 혈액응고인자 장애 등
25	베게너 육아종증		

자료 7

특정질환환자 일부부담액

계층구분		생계중심자가 환자 본인 이외의 경우		생계중심자가 환자 본인인 경우	
		입원(엔)	외래(엔)	입원(엔)	외래(엔)
A	생계중심자의 해당지역 주민세가 비과세인 경우	0	0	0	0
B	생계중심자의 전년 소득세가 비과세인 경우	4,500	2,250	2,250	1,120
C	생계중심자의 전년 소득세 연간 과세액이 10,000 엔 이하인 경우	6,900	3,450	3,450	1,720
D	생계중심자의 전년 소득세 연간 과세액이 10,001 엔 이상 30,000 엔 이하의 경우	8,500	4,250	4,250	2,120
E	생계중심자의 전년 소득세 연간 과세액이 30,001 엔 이상 80,000 엔 이하인 경우	11,000	5,500	5,500	2,750
F	생계중심자의 전년 소득세 연간 과세액이 80,001 엔 이상 140,000 엔 이하의 경우	18,700	9,350	9,350	4,670
G	생계중심자의 전년 소득세 연간 과세액이 140,001 엔 이상인 경우	23,100	11,550	11,550	5,770





# 암 종합상담 Q&A 모음①

의료비편

경제 · 근로편

2004년 3월제 1판 제 1쇄 발행  
2007년 3월 제 1판 제 2쇄 발행

집필 : 이시카와 무츠미, 타카다 유카, 하마자키 료

작성 : 시즈오카 현립 시즈오카 암센터 종합상담

우편번호 411-8777

시즈오카현 순토군 나가이즈미쵸 시모나가쿠보 1007 번지

TEL 055-989-5710(직통)

FAX 055-989-5713

E-mail scchr39@scchr.jp

본서를 작성하면서 시즈오카 암 센터 종합상담 사례를 참고하였으며, 또한 후생노동과학연구비 보조금 : 효과적 의료기술의 확립 추진 임상연구사업 : 「단기(치료 후 5년 이내) 암 생존자를 중심으로 한 심리치료, 의료상담 등의 나아갈 방향에 관한 조사연구」반, 후생노동성 암 연구 지원금 : 「암 생존자의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반, 동 「일본에서의 암 의료 적정화에 관한 연구」반의 성과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본서는 시즈오카현 건강복지부 암 종합대책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입니다.